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1항제3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